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지원
관 련 법 규 집

2007. 12



안 내 말 씀

이 책자는 비영리법인 설립 및 민간단체지원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을 수록하여 관심있는 단체 또는 개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책자가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랍니다.

본 책자의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위치 : 정책자료→통일부자료실→간행물자료, 189번

<비영리법인 상담, 신청, 허가부서>

기획조정실 비상계획법무담당관

- 전화 : 2100-5713~14
- FAX : 2100-5699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부서>

| | |
|---------|-----------------|
| 통일정책국 | 2100-5727, 5752 |
| 남북교류협력국 | 2100-5802, 5845 |
| 인도협력국 | 2100-5864, 5891 |

차 례

| | |
|--------------------------------|----|
| 1. 민 법(법인) | 1 |
| 2.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15 |
| 3. 公益法人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 | 31 |
| 4.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 43 |
| 5. 통일부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규칙 | 63 |
|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71 |
| 7.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 77 |

<부 록>

| | |
|------------------------------|-----|
| 1. 통일부 비영리법인설립허가 신청 안내 | 89 |
|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안내 | 105 |

민 법(법인)

민법 (1958·2·22)
(법률제471호)

개 정 2007.5.17 법률 제8435호

第 1 編 總 則

第 3 章 法 人

第 1 節 總 則

第31條(法人成立의 準則) 法人은 法律의 規定에 依함이 아니면 成立하지 못한다.

第32條(非營利法人의 設立과 許可) 學術, 宗教, 慈善, 技藝, 社交 其他 營利 아닌 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社團 또는 財團은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어 이를 法人으로 할 수 있다.

第33條(法人設立의 登記) 法人은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第34條(法人의 權利能力) 法人은 法律의 規定에 좇아 定款으로 定한 目的의 範圍內에서 權利와 義務의 主體가 된다.

第35條(法人의 不法行爲能力) ①法人은 理事 其他 代表者가 그 職務에 關하여 他人에게 加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理事 其他 代表者는 이로 因하여 自己의 損害賠償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②法人의 目的範圍外의 行爲로 因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 그 事項의 議決에 贊成하거나 그 議決을 執行한 社員, 理事 및 其他 代表者가 連帶하여 賠償하여야 한다.

第36條(法人의 住所) 法人의 住所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

있는 것으로 한다.

第37條(法人的 事務의 檢査, 監督) 法人的 事務는 主務官廳이 檢査, 監督한다.

第38條(法人的 設立許可의 取消) 法人이 目的以外的 事業을 하거나 設立許可의 條件에 違反하거나 其他 公益을 害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主務官廳은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第39條(營利法人) ①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社團은 商事會社設立의 條件에 좇아 이를 法人으로 할 수 있다.

②前項의 社團法人에는 모두 商事會社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 2 節 設 立

第40條(社團法人의 定款) 社團法人의 設立者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한 定款을 作成하여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事務所의 所在地
4. 資産에 關한 規定
5. 理事의 任免에 關한 規定
6. 社員資格의 得失에 關한 規定
7. 存立時期나 解散事由를 定하는 때에는 그 時期 또는 事由

第41條(理事의 代表權에 對한 制限) 理事의 代表權에 對한 制限은 이를 定款에 記載하지 아니하면 그 效力이 없다.

第42條(社團法人의 定款의 變更) ①社團法人의 定款은 總社員 3分之 2以上の 同意가 있을때에 限하여 이를 變更할 수 있다. 그러나 定數에 關하여 定款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그 規定에 依한다.

②定款의 變更은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지 아니하면 그 效力이 없다.

第43條(財團法人의 定款) 財團法人의 設立者는 一定한 財産을 出捐하고 第40條第1號 乃至 第5號의 事項을 記載한 定款을 作成하여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第44條(財團法人의 定款의 補充) 財團法人의 設立者가 그 名稱, 事務所 所在地 또는 理事任免의 方法을 定하지 아니하고 死亡한 때에는 利害關係人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法院이 이를 定한다.

第45條(財團法人의 定款變更) ①財團法人의 定款은 그 變更方法을 定款에 定한 때에 限하여 變更할 수 있다.

②財團法人의 目的達成 또는 그 財産의 保全을 爲하여 適當한 때에는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名稱 또는 事務所의 所在地를 變更할 수 있다.

③第42條第2項의 規定은 前2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第46條(財團法人의 目的 其他의 變更) 財團法人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때에는 設立者나 理事는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어 設立의 趣旨를 參酌하여 그 目的 其他 定款의 規定을 變更할 수 있다.

第47條(贈與, 遺贈에 關한 規定의 準用) ①生前處分으로 財團法人을 設立하는 때에는 贈與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②遺言으로 財團法人을 設立하는 때에는 遺贈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48條(出捐財産의 歸屬時期) ①生前處分으로 財團法人을 設立하는 때에는 出捐財産은 法人이 成立된 때로부터 法人의 財産이 된다.

②遺言으로 財團法人을 設立하는 때에는 出捐財産은 遺言의 效力이 發生한 때로부터 法人에 歸屬한 것으로 본다.

第49條(法人의 登記事項) ①法人設立의 許可가 있는 때에는 3週間內에 主된 事務所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登記事項은 다음과 같다.

1. 目的
2. 名稱
3. 事務所
4. 設立許可의 年月日
5. 存立時期나 解散事由를 定한 때에는 그 時期 또는 事由
6. 資産의 總額
7. 出資의 方法을 定한 때에는 그 方法
8. 理事의 姓名, 住所
9. 理事의 代表權을 制限한 때에는 그 制限

第50條(分事務所設置의 登記) ①法人이 分事務所를 設置한 때에는 主事務所 所在地에서는 3週間內에 分事務所를 設置한 것을 登記하고 그 分事務所 所在地에서는 同期間內에 前條第2項의 事項을 登記하고 다른 分事務所 所在地에서는 同期間內에 그 分事務所를 設置한 것을 登記하여야 한다.

②主事務所 또는 分事務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登記所의 管轄區域內에 分事務所를 設置한 때에는 前項의 期間內에 그 事務所를 設置한 것을 登記하면 된다.

第51條(事務所移轉의 登記) ①法人이 그 事務所를 移轉하는 때에는 舊所在地에서는 3週間內에 移轉登記를 하고 新所在地에서는 同期間內에 第49條第2項에 掲記한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②同一한 登記所의 管轄區域內에서 事務所를 移轉한 때에는 그

移轉한 것을登記하면 된다.

第52條(變更登記) 第49條第2項의 事項中에 變更이 있는 때에는 3週間內에 變更登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29]

第53條(登記期間의 起算) 前3條의 規定에 依하여 登記할 事項으로 官廳의 許可를 要하는 것은 그 許可書가 到着한 날로부터 登記의 期間을 起算한다.

第54條(設立登記以外的 登記의 效力과 登記事項의 公告) ①設立登記以外的 本節의 登記事項은 그 登記後가 아니면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②登記한 事項은 法院이 遲滯없이 公告하여야 한다.

第55條(財産目錄과 社員名簿) ①法人은 成立한 때 및 每年 3月內에 財産目錄을 作成하여 事務所에 備置하여야 한다. 事業年度를 定한 法人은 成立한 때 및 그 年度末에 이를 作成하여야 한다.

②社團法人은 社員名簿를 備置하고 社員의 變更이 있는 때에는 이를 記載하여야 한다.

第56條(社員權의 讓渡, 相續禁止) 社團法人의 社員의 地位는 讓渡 또는 相續할 수 없다.

第3節 機關

第57條(理事) 法人은 理事를 두어야 한다.

第58條(理事의 事務執行) ①理事는 法人의 事務를 執行한다.

②理事가 數人인 境遇에는 定款에 다른 規定이 없으면 法人의 事務執行은 理事의 過半數로써 決定한다.

第59條(理事의 代表權) ①理事는 法人의 事務에 關하여 各自 法人을 代表한다. 그러나 定款에 規定한 趣旨에 違反할 수 없고 特別社團法人은 總會의 議決에 依하여야 한다.

②法人의 代表에 關하여는 代理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60條(理事의 代表權에 對한 制限의 對抗要件) 理事의 代表權에 對한 制限은 登記하지 아니하면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01.12.29]

第61條(理事의 注意義務) 理事는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로 그 職務를 行하여야 한다.

第62條(理事의 代理人 選任) 理事는 定款 또는 總會의 決議로 禁止하지 아니한 事項에 限하여 他人으로 하여금 特定한 行爲를 代理하게 할 수 있다.

第63條(臨時理事의 選任) 理事가 없거나 缺員이 있는 境遇에 이로 因하여 損害가 생길 念慮 있는 때에는 法院은 利害關係人이나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臨時理事를 選任하여야 한다.

第64條(特別代理人의 選任) 法人과 理事의 利益이 相反하는 事項에 關하여는 理事는 代表權이 없다. 이 境遇에는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特別代理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第65條(理事의 任務懈怠) 理事가 그 任務를 懈怠한 때에는 그 理事는 法人에 對하여 連帶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이 있다.

第66條(監事) 法人은 定款 또는 總會의 決議로 監事를 들 수 있다.

第67條(監事의 職務) 監事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

1. 法人의 財産狀況을 監査하는 일
2. 理事의 業務執行의 狀況을 監査하는 일
3. 財産狀況 또는 業務執行에 關하여 不正, 不備한 것이 있음을 發見한 때에는 이를 總會 또는 主務官廳에 報告하는 일
4. 前號의 報告를 하기 爲하여 必要있는 때에는 總會를 召集하는 일

第68條(總會의 權限) 社團法人의 事務는 定款으로 理事 또는 其他 任員에게 委任한 事項外에는 總會의 決議에 依하여야 한다.

第69條(通常總會) 社團法人의 理事는 每年 1回以上 通常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第70條(臨時總會) ① 社團法人의 理事는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臨時總會를 召集할 수 있다.

② 總社員의 5分の 1以上으로부터 會議의 目的事項을 提示하여 請求한 때에는 理事는 臨時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이 定數는 定款으로 增減할 수 있다.

③ 前項의 請求있는 後 2週間內에 理事가 總會召集의 節次를 밝지 아니한 때에는 請求한 社員은 法院의 許可를 얻어 이를 召集할 수 있다.

第71條(總會의 召集) 總會의 召集은 1週間前에 그 會議의 目的事項을 記載한 通知를 發하고 其他 定款에 定한 方法에 依하여야 한다.

第72條(總會의 決議事項) 總會는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通知한 事項에 關하여서만 決議할 수 있다. 그러나 定款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그 規定에 依한다.

第73條(社員의 決議權) ①各社員의 決議權은 平等으로 한다.

②社員은 書面이나 代理人으로 決議權을 行使할 수 있다.

③前2項의 規定은 定款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74條(社員이 決議權없는 境遇) 社團法人과 어느 社員과의 關係事項을 議決하는 境遇에는 그 社員은 決議權이 없다.

第75條(總會의 決議方法) ①總會의 決議는 本法 또는 定款에 다른 規定이 없으면 社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社員의 決議權의 過半數로써 한다.

②第73條第2項의 境遇에는 當該 社員은 出席한 것으로 한다.

第76條(總會의 議事錄) ①總會의 議事に 關하여는 議事錄을 作成하여야 한다.

②議事錄에는 議事の 經過, 要領 및 結果를 記載하고 議長 및 出席한 理事가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③理事는 議事錄을 主된 事務所에 備置하여야 한다.

第 4 節 解 散

第77條(解散事由) ①法人은 存立期間의 滿了, 法人의 目的의 達成 또는 達成의 不能 其他 定款에 定한 解散事由의 發生, 破産 또는 設立許可의 取消로 解散한다.

②社團法人은 社員이 없게 되거나 總會의 決議로도 解散한다.

第78條(社團法人의 解散決議) 社團法人은 總社員 4分の 3以上の 同意가 없으면 解散을 決議하지 못한다. 그러나 定款에 다른 規

定이 있는 때에는 그 規定에 依한다.

第79條(破産申請) 法人이 債務를 完濟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理事는 遲滯없이 破産申請을 하여야 한다.

第80條(殘餘財産의 歸屬) ①解散한 法人의 財産은 定款으로 指定한 者에게 歸屬한다.

②定款으로 歸屬權利者를 指定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指定하는 方法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理事 또는 清算人은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어 그 法人의 目的에 類似한 目的을 爲하여 그 財産을 處分할 수 있다. 그러나 社團法人에 있어서는 總會의 決議가 있어야 한다.

③前2項의 規定에 依하여 處分되지 아니한 財産은 國庫에 歸屬한다.

第81條(清算法人) 解散한 法人은 清算의 目的範圍內에서만 權利가 있고 義務를 負擔한다.

第82條(清算人) 法人이 解散한 때에는 破産의 境遇를 除하고는 理事가 清算人이 된다. 그러나 定款 또는 總會의 決議로 달리 定한 바가 있으면 그에 依한다.

第83條(法院에 依한 清算人의 選任)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清算人이 될 者가 없거나 清算人의 缺員으로 因하여 損害가 생길 念慮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 利害關係人이나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清算人을 選任할 수 있다.

第84條(法院에 依한 清算人의 解任) 重要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 利害關係人이나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清算人을 解任할 수 있다.

第85條(解散登記) ①清算人은 破産의 境遇를 除하고는 그 就任後 3週間內에 解散의 事由 및 年月日, 清算人의 姓名 및 住所와 清

算人の 代表權을 制限한 때에는 그 制限을 主된 事務所 및 分事務所 所在地에서 登記하여야 한다.

②第52條의 規定은 前項의 登記에 準用한다.

第86條(解散申告) ①清算人は 破産의 境遇를 除하고는 그 就任後 3週間內에 前條第1項의 事項을 主務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②清算中에 就任한 清算人は 그 姓名 및 住所를 申告하면 된다.

第87條(清算人の 職務) ①清算人の 職務는 다음과 같다.

1. 現存事務의 終結
2. 債權의 推尋 및 債務의 辨濟
3. 殘餘財産의 引渡

②清算人は 前項의 職務를 行하기 爲하여 必要한 모든 行爲를 할 수 있다.

第88條(債權申告의 公告) ①清算人は 就任한 날로부터 2月內에 3回以上の 公告로 債權者에 對하여 一定한 期間內에 그 債權을 申告할 것을 催告하여야 한다. 그 期間은 2月以上이어야 한다.

②前項의 公告에는 債權者가 期間內에 申告하지 아니하면 清算으로부터 除外될 것을 表示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公告는 法院의 登記事項의 公告와 同一한 方法으로 하여야 한다.

第89條(債權申告의 催告) 清算人は 알고 있는 債權者에게 對하여는 各各 그 債權申告를 催告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債權者는 清算으로부터 除外하지 못한다.

第90條(債權申告期間內의 辨濟禁止) 清算人は 第88條第1項의 債權申告期間內에는 債權者에 對하여 辨濟하지 못한다. 그러나 法人은 債權者에 對한 遲延損害賠償의 義務를 免하지 못한다.

第91條(債權辨濟의 特例) ①清算中の 法人은 辨濟期에 이르지 아

니한 債權에 對하여도 辨濟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條件있는 債權, 存續期間의 不確定한 債權 其他 價額의 不確定한 債權에 關하여는 法院이 選任한 鑑定人의 評價에 依하여 辨濟하여야 한다.

第92條(清算으로부터 除外된 債權) 清算으로부터 除外된 債權者는 法人의 債務를 完濟한 後 歸屬權利者에게 引渡하지 아니한 財産에 對하여서만 辨濟를 請求할 수 있다.

第93條(清算中の 破産) ①清算中 法人의 財産이 그 債務를 完濟하기에 不足한 것이 分明하게 된 때에는 清算人은 遲滯없이 破産宣告를 申請하고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②清算人은 破産管財人에게 그 事務를 引繼함으로써 그 任務가 終了한다.

③第88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公告에 準用한다.

第94條(清算終結의 登記와 申告) 清算이 終結한 때에는 清算人은 3週間內에 이를 登記하고 主務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第95條(解散, 清算의 檢査, 監督) 法人의 解散 및 清算은 法院이 檢査, 監督한다.

第96條(準用規定) 第58條第2項, 第59條 乃至 第62條, 第64條, 第65條 및 第70條의 規定은 清算人에 이를 準用한다.

第 5 節 罰 則

第97條(罰則) 法人의 理事, 監事 또는 清算人은 다음 各號의 境遇에는 5萬圓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1. 本章에 規定한 登記를 懈怠한 때
2. 第55條의 規定에 違反하거나 財産目錄 또는 社員名簿에 不正記載를 한 때

3. 第37條, 第95條에 規定한 檢査, 監督을 妨害한 때
4. 主務官廳 또는 總會에 對하여 事實아닌 申告를 하거나 事實을 隱蔽한 때
5. 第76條와 第90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
6. 第79條, 第93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破産宣告의 申請을 懈怠한 때
7. 第88條, 第93條에 定한 公告를 懈怠하거나 不正한 公告를 한 때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감독에관한규칙**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1972·11·8)
총리령제116호

전문개정 1990·12·6 총리령 제372호
개 정 1991·3·27 총리령 제384호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개 정 1995·10·30 총리령 제524호
1998·6·1 통일부령 제 3호
1999·2·3 통일부령 제 5호
전문개정 1999·12·16 통일부령 제 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주무 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

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설립허가) ①통일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통일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불일 수 있다.

제5조(설립관련 보고) ①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 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통일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4. *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통일부장관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통일부장관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청산인이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9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2·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설립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정관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각각 제3조·제6조 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정관변경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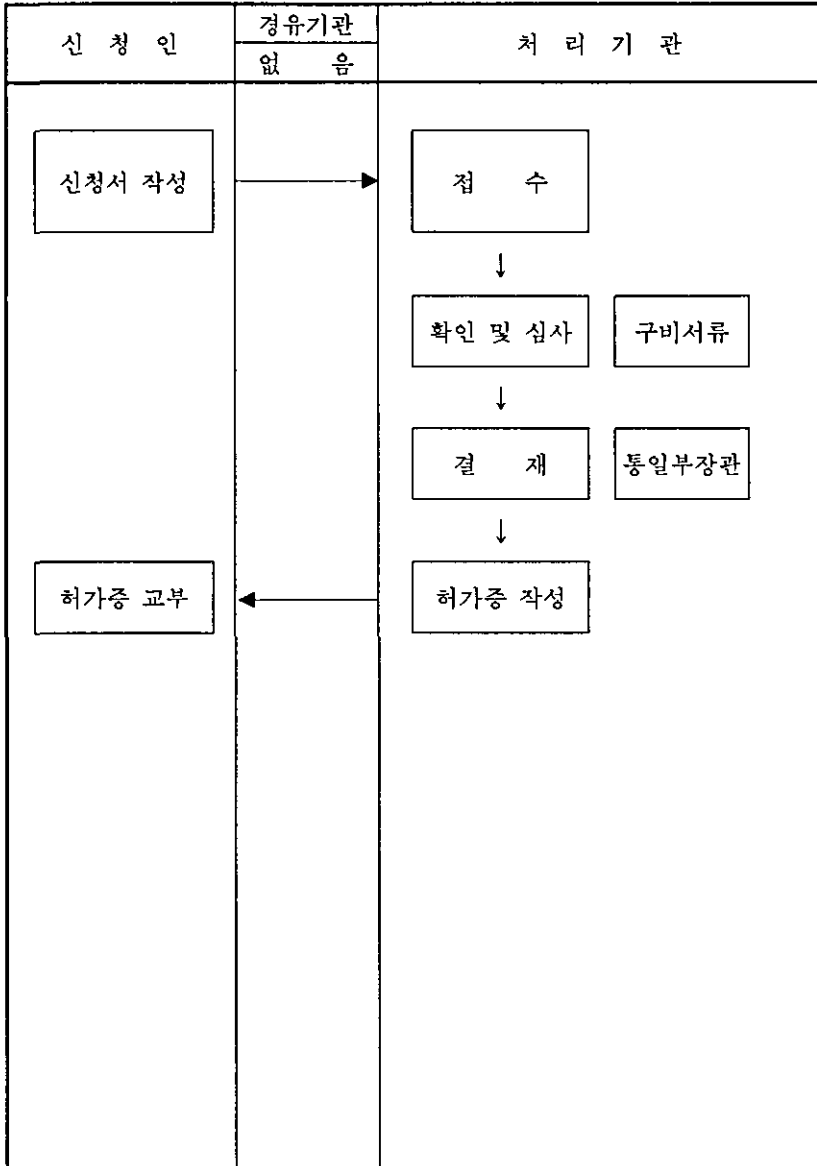
(앞 쪽)

| 법 인 설 립 허 가 신 청 서 | | | | 처리기간 |
|--|-----|-----------|--------|------|
| | | | | 20일 |
| 신 청 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법 인 | 명 칭 | |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민법 제32조 및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 | | |
| ※ 구비서류 | | | | 수수료 |
| | | | | 없 음 |
|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 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 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 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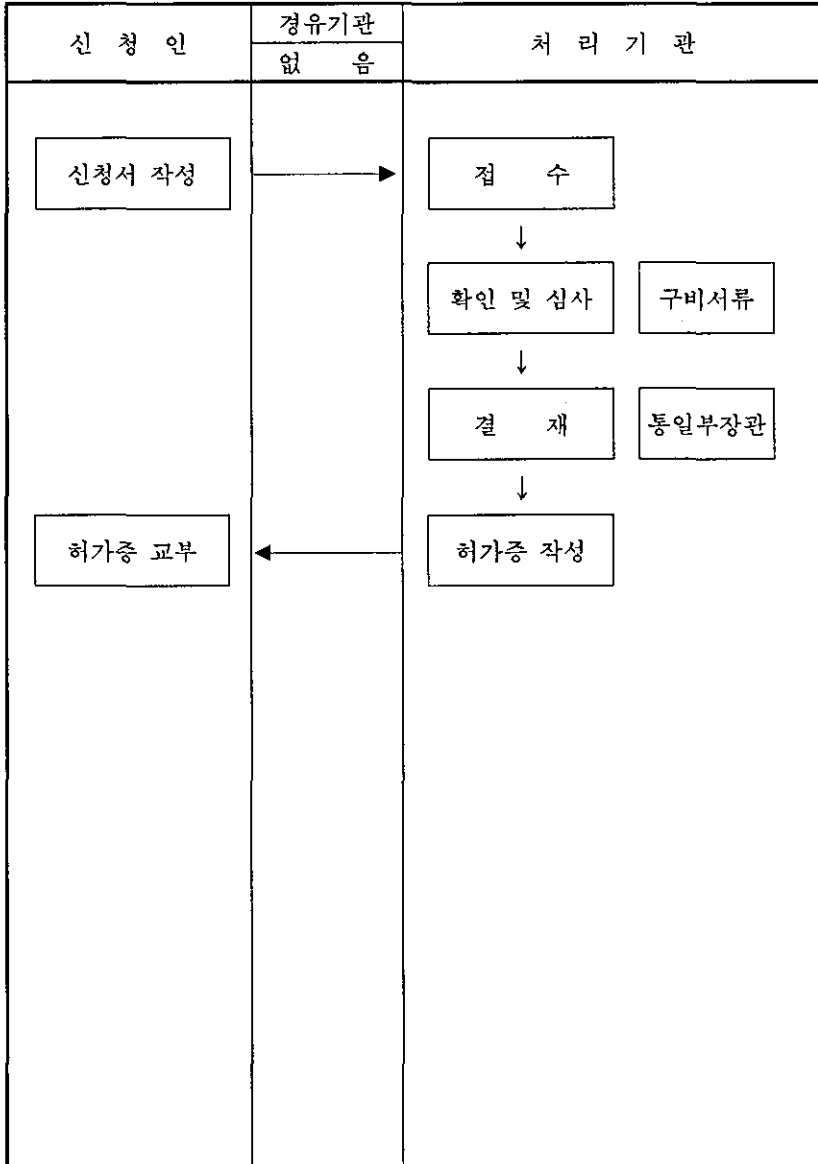
[별지 제2호서식]

| |
|---|
| 제 호 |
| 법 인 설 립 허 가 증 |
| 법 인 명 : |
| 소 재 지 : |
| 대표자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허가조건 : |
| 민법 제32조 및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
| 년 월 일 |
| 통 일 부 장 관 (인) |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별지 제4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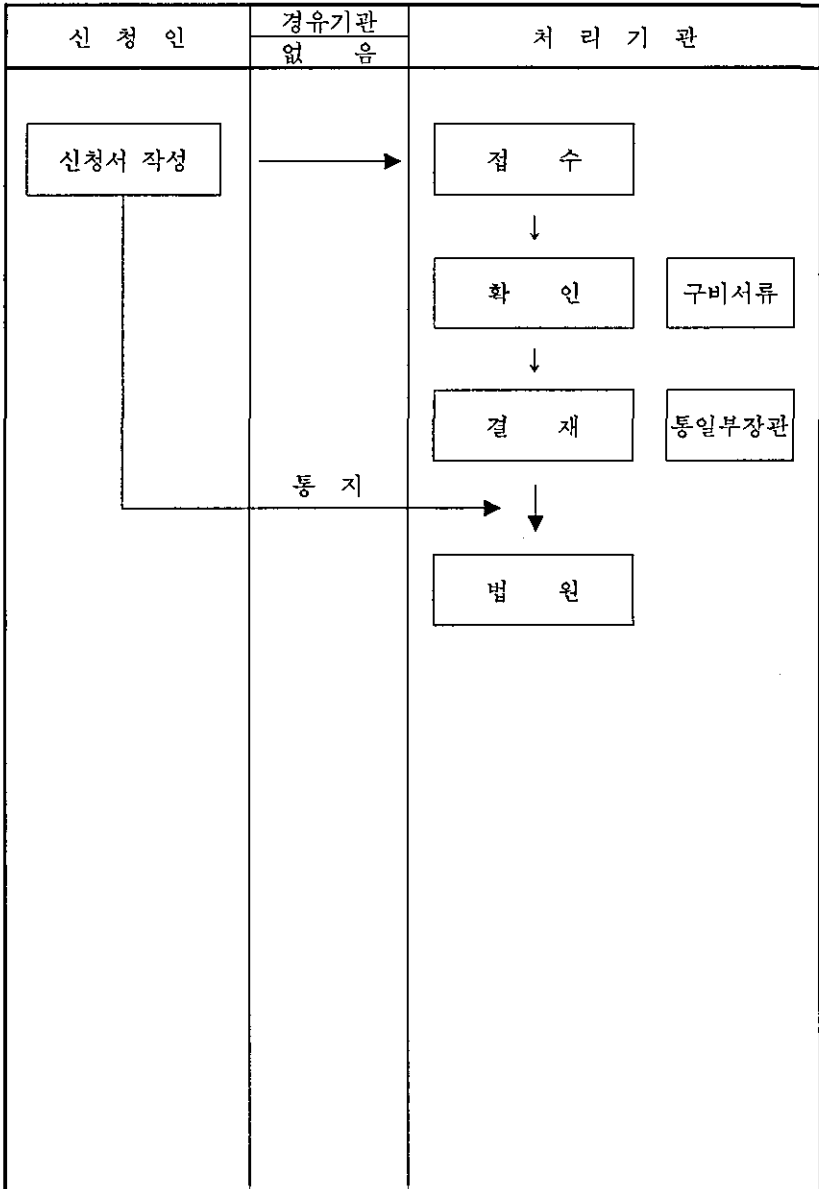
(앞 쪽)

| | | |
|---|-------|-------------|
| 법 인 해 산 신 고 서 | | 처리기간 10일 |
| 청 산 법 인 | 명 칭 | |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청산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청산인주소 | (전화번호:) |
| 해산 연월일 | | |
| 해 산 사 유 | | |
| <p>민법 제85조제1항 및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통일부장관 귀하</p> | | |
| ※ 구비서류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 수수료 없 음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별지 제5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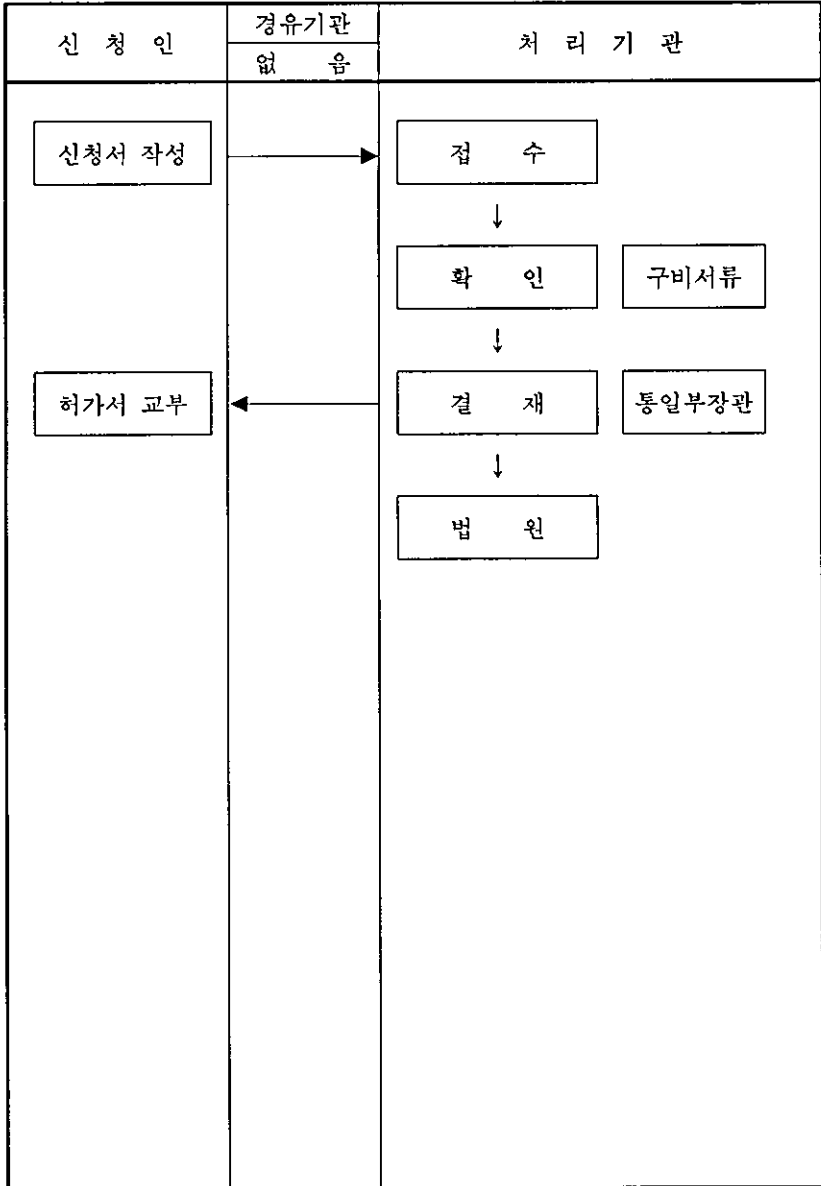
(앞 쪽)

| | | |
|---|---------------|-----------|
|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 | 처리기간 |
| | | 10일 |
| 신청인 | 명칭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대표자(이사·청산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처분재산 | 종류 | |
| | 금액 | (전화번호 :) |
| | 처분방법 | |
| <p>민법 제80조제2항 및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통일부장관 귀하</p> | | |
| ※ 구비서류 | | 수수료 |
| | | 없음 |
| <p>1. 처분사유서 1부</p> <p>2. 처분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p>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公益法人의設立・運營에
관한法律

公益法人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

일부개정 2005.3.31 법률 제7428호

第1條(目的) 이 법은 法人의 設立·運營등에 관한 民法의 規定을 補充함으로써 法人으로 하여금 그 公益性을 維持하며 健全한 活動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適用範圍) 이 법은 財團法人 또는 社團法人으로서 社會一般의 利益에 供與하기 위하여 學資金·獎學金 또는 研究費의 補助나 支給, 學術·慈善에 관한 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法人(이하 "公益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 適用한다.

第3條(定款의 準則등) ①公益法人은 定款에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事務所의 所在地
4. 設立當時의 資産의 種類·狀態 및 評價價額
5. 資産의 管理方法과 會計에 관한 事項
6. 理事 및 監事의 定數·任期 및 그 任免에 관한 事項
7. 理事의 決議權行使 및 代表權에 관한 事項
8. 定款의 變更에 관한 事項
9. 公告 및 그 方法에 관한 事項
10. 存立時期와 解散事由를 정한 때에는 그 時期와 事由 및 殘餘財産의 處理方法
11. 業務監査 및 會計檢査에 관한 事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款의 記載事項과 기타 필요한 事項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設立許可基準) ①主務官廳은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益法人의 設立許可申請이 있는 때에는 關係事實을 調査하여 財團法人에 있어서는 出捐財産의 收入, 社團法人에 있어서는 會費·寄附金등으로 造成되는 財源의 收入(이하 각 "基本財産"이라 한다)으로 目的事業을 원활히 達成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設立許可를 한다.

②主務官廳은 公益法人의 設立許可를 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會費徵收, 受惠對象에 관한 事項 기타 필요한 條件을 붙일 수 있다.

③公益法人은 目的達成을 위하여 收益事業을 하고자 할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마다 主務官廳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第5條(任員등) ①公益法人에는 5人 이상 15人 이하의 理事와 2人의 監事를 두되, 主務官廳의 承認을 얻어 그 數를 增減할 수 있다.

②任員은 主務官廳의 承認을 받아 就任한다.

③理事 및 監事の 任期는 定款으로 정하되, 理事는 4年, 監事는 2年을 超過할 수 없다. 다만, 連任할 수 있다.

④理事의 過半數는 大韓民國 國民이어야 한다.

⑤理事會의 構成에 있어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特別한 關係가 있는 者의 數는 理事現員의 5分の 1을 超過할 수 없다. <개정 1995.1.5>

⑥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益法人의 任員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未成年者

2.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3. 破産宣告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禁錮 이상의 刑을 받고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 3년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5.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員 就任承認이 取消된 후 2년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
- ⑦理事 또는 監事중에 缺員이 생긴 때에는 2月내에 補充하여야 한다.
- ⑧監事は 理事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한 關係가 있는 者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人是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法律과 會計에 관한 知識과 經驗이 있는 者중에서 主務官廳이 推薦할 수 있다.
- ⑨公益法人은 主務官廳의 承認을 얻어 常勤任職員의 定數를 정하고, 常勤任職員에 대하여는 報酬를 支給한다.

第6條(理事會) ①公益法人에 理事會를 둔다.

- ②理事會는 理事로써 構成한다.
- ③理事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理事중에서 互選한다.
- ④理事會는 理事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第7條(理事會의 機能) ①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決定한다.

1. 公益法人의 豫算, 決算, 借入金 및 財産의 取得·處分과 管理에 관한 事項
2. 定款의 變更에 관한 事項
3. 公益法人의 解散에 관한 事項
4. 任員의 任免에 관한 事項
5. 收益事業에 관한 事項
6. 기타 法令이나 定款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

②理事長 또는 理事가 公益法人과 利害關係가 相反하는 때에는 당해 事項에 관한 議決에 參與하지 못한다.

第8條(理事會의 召集) ①理事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理事會를 召集할 수 있다.

②理事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召集要求가 있을 때에는 그 召集要求日로부터 20日 이내에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1. 在籍理事 過半數 이상이 會議의 目的을 提示하여 召集을 要求할 때

2. 第10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監事가 召集을 要求할 때

③理事會를 召集할 때에는 적어도 會議 7日전에 會議의 目的을 明示하여 各 理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理事 全員이 集會하고 또 그 全員이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할 경우에 그 召集權者가 闕位되거나 이를 忌避함으로써 7日 이상 理事會의 召集이 不可能한 때에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同으로 監督廳의 承認을 받아 이를 召集할 수 있다. 이 경우 定款이 정하는 理事가 理事會를 主宰한다.

第9條(議決定足數등) ①理事會의 議事は 定款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②理事는 平等한 議決權을 가진다.

③理事會의 議事は 書面決議에 의할 수 없다.

④理事會의 議決은 大韓民國 國民인 理事가 出席理事의 過半數가 되어야 한다.

第10條(監事の 職務) ①監事は 다음 各號의 職務를 행한다.

1. 公益法人의 業務와 財産狀況을 監査하는 일 및 理事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資料의 提出 또는 意見을 要求하고 理事會에

서 發言하는 일

2. 理事會의 會議錄에 記名·捺印하는 일
3. 公益法人의 業務와 財産狀況에 대하여 理事에게 意見을 陳述하는 일
4. 公益法人의 業務와 財産狀況을 監査한 結果 不法 또는 不當한 點이 있음을 發見한 때 이를 理事會에 報告하는 일
5. 第4號의 報告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하는 일

②監事は 公益法人의 業務와 財産狀況을 監査한 結果 不法 또는 不當한 點이 있음을 發見한 때에는 지체없이 主務官廳에 이를 報告하여야 한다.

③監事は 理事가 公益法人의 目的範圍外의 行爲를 하거나,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定款에 違反하는 行爲를 하여 公益法人에게 顯著한 損害를 發生하게 할 憂慮가 있는 때에는 그 理事에 대하여 職務執行을 留止할 것을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第11條(財産) ①公益法人의 財産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區分한다.

②基本財産은 그 目錄과 評價價額을 定款에 記載하여야 하며, 評價價額에 變動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定款變更節次를 밝아야 한다.

③公益法人은 基本財産을 賣渡·贈與·賃貸·交換 또는 用途變更을 하거나 擔保로 提供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定金額 이상을 長期借入하고자 할 때에는 主務官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④公益法人은 目的事業의 達成을 위하여 그 財産을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를 다하여 管理하여야 한다.

第12條(豫算 및 決算등) ①公益法人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의한다.

②公益法人은 主務官廳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 會計年度의 開始전에 翌年度에 實施할 事業計劃 및 豫算을 提出하고 每 會計年度 終了후에 事業實績과 決算을 報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決算報告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認會計士의 監査證明書を 添附하게 할 수 있다.

③公益法人은 決算上 剩餘金을 基本財産에 轉入하거나 翌年度에 移越하여 目的事業에 使用하여야 한다.

④公益法人의 財産管理에 관한 事項, 豫算編成要綱, 會計規則등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3條(殘餘財産의 歸屬) ①解散한 公益法人의 殘餘財産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歸屬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歸屬된 財産은 公益事業에 使用하거나 이를 類似한 目的을 가진 公益法人에게 贈與 또는 無償貸付한다.

第14條(監督) ①主務官廳은 公益法人의 業務를 監督한다.

②주무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4.10.16>

1.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때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감소, 현저한 부당 행위 등으로 인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우려를 생기게 한 때
3. 목적사업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때

③主務官廳은 收益事業을 하는 公益法人에 다음 各號의 事由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公益法人에 대하여 그 事業의 是正이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1. 收益을 目的事業 이외에 사용할 때
2. 당해 事業을 繼續하는 것이 公益法人의 目的에 違背된다고 認定될 때

第15條(租稅減免등) 公益法人에 出捐 또는 寄附한 財産에 대한 相續稅·贈與稅·所得稅·法人稅 및 地方稅는 租稅減免規制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減免할 수 있다.

第16條(設立許可의 取消) ①設立許可를 한 主務官廳은 公益法人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公益法人에 대한 設立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다만, 公益法人의 目的事業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一部の 目的事業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詐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設立許可를 받은 때
 2. 設立許可條件에 違反한 때
 3. 目的達成이 不可能하게 된 때
 4. 目的事業 이외의 事業을 한 때
 5.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定款에 違反한 때
 6. 公益을 害하는 行爲를 한 때
 7. 正當한 理由없이 設立許可를 받은 날로부터 6月 이내에 目的事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1年 이상 事業實績이 없을 때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益法人의 設立許可取消는 다른 方法으로는 監督目的을 達成할 수 없거나 監督廳이 是正을 命令한 후 1年이 經過되어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다.

第16條의2(청문) 主務官廳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益法人의

設立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第17條(監査등) ①主務官廳은 監督上 필요한 때에는 公益法人에 대하여 그 業務報告書의 提出을 命하거나 業務財産管理 및 會計를 監査하여 그 適正을 期하고, 目的事業을 원활히 遂行하도록 指導하여야 한다.

②主務官廳은 公益法人의 효율적 監督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認會計士 기타 關係專門機關으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査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5.1.5>

第18條(權限의 委任) 主務官廳은 이 法에 정한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下級官廳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委任할 수 있다.

第19條(罰則) ①第4條第3項이나 第11條第3項 또는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
2.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거나 虛偽의 報告를 한 때
3.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監査를 拒否 또는 忌避한 때
4. 監事가 正當한 理由없이 職務遂行을 拒否하거나 職務를 遺棄한 때

③理事 또는 監事가 第1項 및 第2項의 罪를 犯하였을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公益法人에 대하여도 第1項 및 第2項의 罰金刑에 處한다. 다만, 主務官廳이 推薦한 監事の 行爲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0條(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 則 <제2814호,1975.12.31>

-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후 3月이 經過된 날로부터 施行한다.
- ②(現存公益法人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主務官廳의 許可를 받아 設立한 公益法人은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것으로 본다.
- ③(同前) 附則 第2項의 公益法人은 6月내에 이 法이 정하는 필요한 措置와 定款의 變更許可申請을 하여야 한다.
- ④(同前) 附則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主務官廳이 定款의 變更許可를 하는 때에는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條件을 붙일 수 있다.

附 則 <제4932호,1995.1.5>

-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 ②(理事에 대한 經過措置) 主務官廳은 이 法 施行후 第5條第5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理事의 數가 理事現員의 5分の 1을 초과하는 公益法人에 대하여 理事就任承認을 하는 경우에는 第5條第5項의 改正規定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者에 한하여 理事就任承認을 할 수 있다.

附 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부 칙 <제7228호,2004.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公益法人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3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⑨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시행령**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7.7.18 대통령령 제20171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법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4.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②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제3조(정관에 기재할 사항) ①공익법인의 정관에는 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 및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②제1항제1호의 사업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허가신청) ①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7.6>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 1부,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5. 삭제 <1991.5.31>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등의 증명서 1부
7.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8.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9. 삭제 <1991.5.31>

②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6조(설립허가시에 붙일 조건) ①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단법인의 경우에 회비에 의하여 경비에 충당할 비율과 회비징수방법 기타 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
3.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의 조건을 반드시 붙이되, 주무관청이 수혜자의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한정할 범위에 관하여 미리 재정경제원 장관(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설립이 허가되는 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과 합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5.7.6, 1998.12.31〉

제7조(임원취임승인신청) ①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임원취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주무관청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고,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제5호 및 제7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5.31, 1993.11.20, 1995.7.6, 2004.3.17, 2006.6.12〉

1.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이력서 1부
3. 삭제〈1995.7.6〉
4. 취임승낙서 1부
5.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6. 삭제 〈2006.6.12〉

7.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임원의 특수관계부존재각서

②제1항에 따라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원으로 취임하려는 자의 호적등본을 확인(주무관청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되, 연입되는 임원의 취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7.7.18>

제8조(재산이전의 보고) 공익법인(재단법인에 한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월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재산이전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7.7.18>

제9조(설립등기등의 보고) 공익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등을 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5.7.6, 2004.3.17, 2007.7.18>

제10조(정관변경허가신청) 공익법인이 민법 제42조제2항, 동법 제45조제3항,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7.6>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정관개정안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신청) ①공익법인이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경영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7.6>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4.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공익법인이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조제5항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상속세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7.6>

1. 출연자(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출연자가 기타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

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출연자 또는 이사의 다음의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라. 처의 3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 자. 2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한다"고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개정 1995.7.6>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제4호 및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 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③특수관계가 없는 이사가 재임중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2월 이내에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이사를 개입하여야 한다.<개정 1995.7.6>

제13조(주무관청의 감사추천) ①주무관청은 법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감사 1인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허가시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추천을 행함에 있어서는 공익법인에게 후보를 선정하여 추천을 의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추천의뢰된 자 중에 적격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추천 의뢰를 요구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으로부터 감사 1인을 추천한다는 뜻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추천의뢰가 없는 경우 또는 주무관청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된 감사가 임기만료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종전에 그 법인의 감사중 1인을 주무관청이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새로이 법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의 감사중 이사회에서 지명한 자 1인은 주무관청에서 추천한 감사에 대한 취임승인이 있는 날의 전일에 퇴직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상근직원의 정수 승인신청) 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직원의 정수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기구도표와 부문별 또는 개인별 관장업무를 명시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소집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 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6조(재산의 구분) ①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 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③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기본재산의 처분)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1.20, 1995.7.6>

1. 처분재산명세서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이사회회의록 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

②삭제 <1995.7.6>

③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담보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2. 피담보채권액
- 3 담보권자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5.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④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8조(장기차입에 대한 허가) ①공익법인이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장기차입은 차입하

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개정 1995.7.6>

②공익법인이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단기차입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수지를 명확히 하여 당해연도내에 반드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계획등의 제출) ①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20조(재산관리) 공익법인은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예산편성요강) ①공익법인의 예산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 및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②제1항의 추정대차대조표는 당해 연도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정상태를 표시하되, 전년도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당해 연도에 발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되, 전년도에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표시하여야 한다.

④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에는 각각 그 추정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원칙) ①공익법인의 회계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공익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회계의 구분) ①공익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24조(재산의 평가) 공익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공익법인은 그 정관에 당해 공익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공익법인의 청산인은 해산후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잔여재산이 귀속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잔여재산

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권리 이전절차를 취한 후 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재산은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관리하되,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하거나 무상대부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1994.12.23, 1995.7.6, 2001.1.29>

제26조(이사취임의 승인취소 사유)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또는 이 영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감손, 현저한 부당행위등으로 인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우려를 생기게 한 때
3.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때

②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이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의2 삭제<1997.12.31>

제27조(법인사무의 감사) ①주무관청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공익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감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기타 관계전문기관

에 의한 감사는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액수이상의 기본재산을 관리·운용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실시한다.<신설 1995.7.6>

제28조(준용)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되, 따로 정한 사항이 없는 때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익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8059호,1976.4.1>

-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이 영의 적용대상이 될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통지) 주무관청은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그 소관 법인중 법 및 이 영의 적용대상이 될 공익법인을 확인하고 그 뜻을 당해 공익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익법인은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그 감사중 1인을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는 한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중 1인을 추천의뢰하여야 한다.
- ④(수익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익법인중 수익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은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수익사업의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상근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익법인중 상근직원을 두고 있는 법인은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상근직원의 정수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익법인은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이 영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와 정관의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5>내지 <148>생략

부 칙 <제13377호,1991.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008호,1993.1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48>생략

<149>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2항, 제25조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50〉내지 〈327〉생략

부 칙 〈제14712호,1995.7.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본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매도등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장기차입의 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차입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971호,199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설립허가"를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

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전단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⑩내지 <152>생략

부 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0171호,2007.7.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제8조 단서 및 제9조 단서 중 “전자정부 구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지원 관련법규집

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통일부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규칙

통일부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규칙(1997·9·24)
통일부예규 제6호

| | | | |
|----|------------|-------|-------|
| 개정 | 1998·4·1 | 통일부예규 | 제7호 |
| | 1998·6·1 | 통일부훈령 | 제288호 |
| | 1998·10·16 | 통일부예규 | 제8호 |
| | 2006·5·23 | 통일부예규 | 제16호 |
| | 생략 | | |
| | 2006·7·26 | 통일부예규 | 제18호 |
| | 2006·9·19 | 통일부예규 | 제19호 |
| | 2007·3·5 | 통일부예규 | 제20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일부 소관사무와 관련된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업무의 객관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상·내용·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단체 정의 및 지원 내용) ①이 규칙에서 “민간단체등”이라 함은 정부기관이 아닌 법인·단체(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인도 포함)를 말한다.

②이 규칙에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부 후원명칭 사용
2. 정부포상 추천
3. 통일부장관표창장 및 상장 수여
4. 행사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5. 기타 민간단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조의2(지원업무의 소관 부서) ①지원신청서류는 소관 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한다.<개정 2004. 4.14>

②지원업무의 소관 부서는 단체의 성격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분류한다. 다만, 단체의 성격과 지원요청 행사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소관 업무에 따른다. <개정 2006. 7.26>

1. 등록단체는 관리부서
2. <삭제 2006. 7.26>
3. <삭제 2004. 4.14>
4. 전국·국제규모 사회단체, 응변단체, 각종 기념사업회, 국회·공무원단체 및 일회성행사단체는 혁신재정기획본부
5. 언론, 통일교육·정책에 대한 학술·연구·조사 관련단체는 정책홍보본부<개정 2006. 7.26>
6. 경제분야 관련단체는 남북경제협력본부
7. 인권, 사회·문화·예술·종교·체육분야, 대북지원, 환경, 이산가족, 북한이탈주민 관련단체는 사회문화교류본부<개정 2004. 3.17, 2006. 7.26>
8. 학술·연구·조사 관련단체는 정보분석본부

9. 개성공단사업 관련단체는 개성공단사업지원단<신설 2006.7.26>

③ 소관 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혁신재정기획본부에서 처리한다. <개정 2001. 6. 4, 2004. 4.14>

제3조(후원명칭 및 상장 지원) ①통일부 후원명칭 및 상장을 지원할 수 있는 행사나 사업(이하 "행사"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기본사업계획 승인시 통일부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1. 통일부가 민간단체에 요청하거나 위탁한 행사
2. 통일부가 그 행사에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3.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이 지원하는 행사로서 지원기관의 요청이 있는 행사
4. 통일 및 남북문제를 단일주제로 하고 서울특별시, 2개이상의

광역시·도 단위에 걸친 규모이거나 통일 및 남북문제를 포함하여 여러 개의 주제를 갖는 전국규모의 비영리행사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사

가. 5천명 이상이 관람하는 전시·공연행사

나. 5백명 이상이 직접 참여하는 대중행사

다. 3백명 이상이 참여하는 강연회·세미나 등 학술행사

라. 2백명 이상이 참여하는 경진대회

5. 기타 통일 및 남북문제 관련 행사로서 둘 이상의 부서장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행사(개정 2006.7.26) *“인식”의 정정?*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일부 후원명칭 및 상장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1. 공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사
2. 북한과 공동으로 행하는 민간차원의 행사로서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행사
3. 전전한 통일논의 및 남북관계 개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사
4. 정부의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주제로 하는 행사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6. 모금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7. 기업이 광고·선전활동의 일환으로 후원·협찬하는 행사
8. 정당 또는 정치단체가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후원·협찬하는 행사
9. 전국규모의 연합회가 있는 경우 지부가 주관하는 행사

③제1항제4호 내지 제5호에서 통일 및 남북문제를 주제로 하는 행사라 함은 통일의식 함양 및 남북관계의 개선을 주된 주제 또는 내용으로 하는 행사를 말하며, 통일 및 남북문제가 다른 주

제에 부속된 주제이거나 다른 내용의 일부분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통일 및 남북문제를 주제로 하는 행사로 보지 아니한다. <동조 전문개정 2001. 6. 4>

제4조(정부포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업무 소관부서는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및 그 추천을 할 수 있다.<개정 2006.7.26>

1. 건전한 민간통일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2. 통일부가 허가한 비영리 법인의 회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소속 단체에 기여한 자 <개정 98.10.16>

3. 통일부 업무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신설 2001. 6. 4>

②각종 비리를 행한 사실이 적발되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포상 및 그 추천을 하지 않는다. <개정 98.10.16>

③정부포상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훈격이 국무총리표창 이상인 정부포상은 포상 3개월전, 통일부장관표창은 포상 40일전에 혁신재정기획본부 및 소관 부서와 포상계획 등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1. 6. 4>

제5조 <삭제 2001. 6. 4>

제6조(기타 지원) 통일부장관은 소속 직원의 행사 참석, 행사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통일교육 및 판문점 견학 등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이 규칙에서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4>

1. 지원을 요청하는 문서

2. 행사계획서(행사의 일시, 장소, 규모, 취지, 일정계획, 주제 또는 내용, 참석예정자 또는 인원, 소요예산 및 예산확보계획, 홍보계획, 협찬·후원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3. 단체현황(개인인 경우에는 약력)
4. 기타 통일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② <삭제 2001. 6. 4>

③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별도의 포상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이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1. 6. 4, 2006.7.26>

제8조(지원결정 및 통지)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신청일 이후 20일 이내에 혁신재정기획본부장의 협조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26>

②상장지원인 경우에 소관 부서장은 인사기획팀장에게 상장발급을 의뢰한다. <개정 98·6·1, 2001. 6. 4, 2006.7.26>

제9조(정부포상 신청 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포상 또는 통일부장관의 상장수여를 통지받은 자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표창장 또는 상장문안
2. 대상자 명단(대상자가 행사당일 결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공적조서(정부포상에 한한다)
4. 기타 통일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②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4>

제10조(공적심의회위원회)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의 공적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의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혁신재정기획본부장, 정책홍보본부장, 남북경제협력본부장, 사회문화교류본부장, 정보분석본부장,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이 된다. 단, 안전이 소속기관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도 위원이 된다.〈개정 2004.3.17, 2004. 4.14〉

③위원회의 간사는 안전과 관련된 주무팀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위원회 심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정부포상 결정·통지) 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된 사항중 통일부장관 표창은 차관 결재로 확정한다. 〈개정 2006.7.26〉

②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이 차관의 결재를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추천하며,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26〉

제13조(기록유지 등) 민간단체 지원업무의 소관 부서 및 소속기관은 지원되는 행사의 진행상황, 결과보고서 및 평가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4〉

부 칙(2007·3·5)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2000.1.12 법률 제6118호

제1조(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3조(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유형내에서 공

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 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④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제출기한 2월 전에 공고하거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자격,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3월 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조세감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우편요금의 지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조금의 환수등)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할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 또는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3조(벌칙) ①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附 則 <제6118호,2000.1.12>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업비"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경비를 말한다. 다만, 인적 경비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성격의 경비에 한한다.

제3조(등록절차)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에게,그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주무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등록을 변경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하며, 등록의 변경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3.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시·도를 달리한 경우를 말한다)
4.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제4조(등록의 말소) ①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한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사업의 유형)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3.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제6조(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1.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2.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3. 3급(시·도의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최한다.

④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2.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3. 기타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

제8조(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①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적인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독창성
 2. 경제성
 3. 파급효과
 4.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5.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6.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7.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유형별 배정금액
2. 심사성적

3.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

③제2항제1호의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제출된 신청사업 수 및 신청사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의 공고는 2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의 게재에 의한다.

제10조(사업계획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3.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4. 기대효과
5. 사업비 집행계획
6.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사업보고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추진실적
2. 자체평가내용
3. 사업비지출 회계보고
4.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사업평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당해 연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지원 및 협력)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관련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지원 관련법규집

요한 경우에는 당해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우편요금 감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중 우편요금 별·후납 우편물에 대하여는 일반 우편요금의100분의 25를 감액한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로 정한 감액률이 100분의 25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제16783호,2000.4.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당해 연도 지원 사업의 선정전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부 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0>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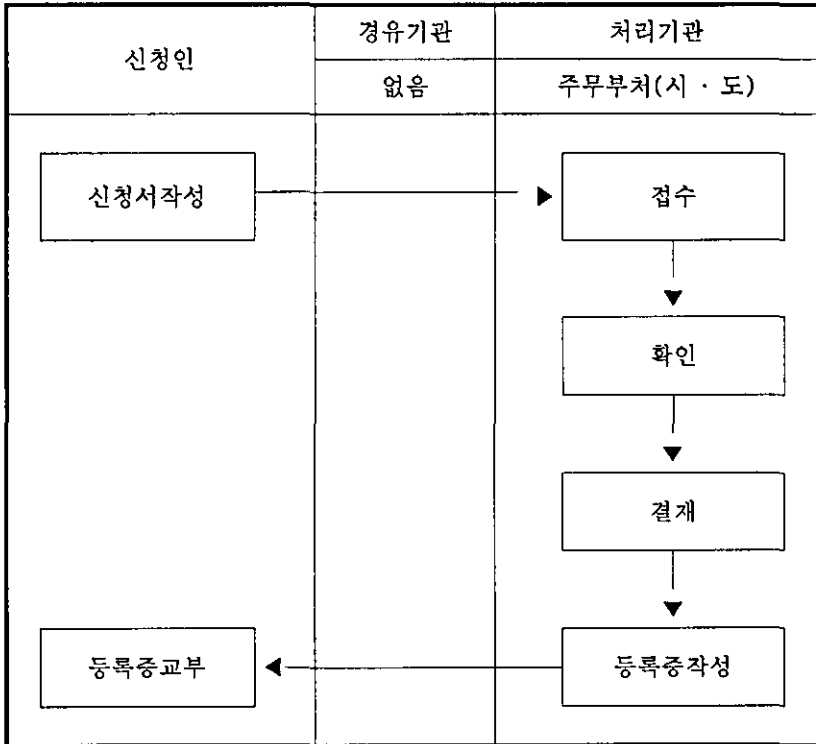
<111>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2>내지 <241>생략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2호서식]

| |
|---|
| 제 호 |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 1. 단체명칭 : |
| 2. 소재지 : |
| 3. 대표자 : |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4. 주된 사업 |
|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장관(시·도지사) <input type="checkbox"/> |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m')

〈부 록〉

**통일부 비영리법인설립허가
신청 안내**

통일부 비영리법인설립허가 신청 안내

□ 설립허가 조건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을 것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등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 정관 1부
 -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자산의 관리 방법과 회계에 관한사항,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공고 방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등 규정
 - **각 장마다 발기인 또는 임원의 간인 날인**
-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부확인서) 각 1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지원 관련법규집

-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 임원취임 예정자의 직위,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일시, 장소, 참석자, 설립취지 및 목적낭독, 임원선임 등 기구 편성, 정관안, 사업내용, 수지예산서 심사, 발기인 또는 임원 전원 서명 날인
- 회원명단 1부(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연락처 기재)

□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민법 제32조
 - 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등

발기인 성명·주소·약력

| 성 명 |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 주요 약력 | 연락처 |
|------|------------|--------|---|-----|
| (한자) | | (우편번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 산 총 팔 표

| 재 산 구 분 | 수 량 | 평 가 액 | 설립년도 수익액 | 취득원인 | 비고 |
|------------------|-----|-------|----------|------|----|
| 기 본 재 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운 영 재 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합 계 | | 원 | | | |

기본재산 목록

| 종 별 (용도별) | 수 량 | 평 가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원 | |

운영재산 목록

| 종 별 | 수 량 | 평 가 액 | 용 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원 | | |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〇〇 사단(재단)법인 설립대표자 〇〇〇 귀하

본인이 소유한 다음 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귀 〇〇 법인에 무상 출연(기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위 기부자 〇〇〇 (인)

※ 인감증명서 첨부

〈기부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종별 | 수량 | 금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수지예산서

○ ○ 년도

(단위 : 원)

| 수 입 | | | 지 출 | | |
|---------------|-----|-----|-----------------|-----------|---------|
| 구 분 | | 금 액 | 구 분 | | 금 액 |
| ① 회 비 | | | ① 경 상 비 | 인건비 | |
| | | | | 운영비 | |
| | 소 계 | | | 소 계 | |
| ② 출 연 금 | | | ② 퇴 직 적 립 금 | | |
| | | | ③ 법 인 세 | | |
| | 소 계 | | | | |
| ③ 과 실 소 득 | | | ④ 목 적 사 업 비 | | |
| ④ 수 익 사 업 | | | | | |
| | | | | 소 계 | |
| | 소 계 | | ⑤ 기 본 재 산 편 입 액 | | |
| ⑤ 전 기 이 월 액 | | | ⑥ 차 기 이 월 액 | 목 적 사 업 비 | 전 기 당 기 |
| | | | | 이월 잉여금 | |
| | | | | 소 계 | |
| | 소 계 | | | | |
| ⑥ 법 인 세 환 급 액 | | | ⑦ | | |
| ⑦ | | | ⑧ | | |
| ⑧ | | | ⑨ | | |
| 합 계 | | | 합 계 | | |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주요약력 | 입기 |
|-----|------|-------------|--------|---|----|
| | (한자) | | (우편번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 임 승 낙 서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이번에 새로 설립하는 사단(재단)법인 0 0 0 0 의
이사(감사)에 취임하는 것을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이사(감사) 0 0 0 (인)

특수관계 부존재확인서

본인은 (사단, 재단)법인 0000 의 00에 취임함에 있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각 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 후 동 제한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취임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재단(사단)법인 0 0 0 0 이사(감사) 0 0 0 (인)

0 0 장관(시·도지사) 귀하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1. 회의 일시 :
2. 회의 장소 :
3. 회의 안건 :
4. 출석 회원(발기인) : 명
5. 결석 회원(발기인) : 명
6. 회의 내용

 년 월 일

발기인 대표 000 (인)
발기인 000 (인)
발기인 000 (인)
발기인 000 (인)
발기인 000 (인)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재지 :
2. 소유자 :
3. 사용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단 (사단)법인 0000이
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나. 사용조건 :

 년 월 일
소유자 : (인)

00장관(시·도지사) 귀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안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안내

신규등록

①등록기관 검토 ⇨ ②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현장확인, 소관부서에서 별도 검토시 검토의견 조회 및 접수) ⇨ ③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장 정리 ⇨ ④등록사항 통보 및 등록증 교부 ⇨ ⑤관보(공보)게재 ⇨ ⑥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

※ 등록신청서 접수후 30일 이내 처리

1. 등록기관

○ 주무장관

- 사업범위가 2개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 (조직구성도, 지부장 성명·지부사무소 주소·지부활동상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확인)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중앙 행정기관에 준하는 위원회 등)에 등록

○ 시·도지사

-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등록

〈 등록기관 판단요령 〉

- 회칙(정관)에 기재된 목적 및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등록기관을 판단하되, 단체의 활동범위가 어느 기관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정부조직법상의 직무범위를 기준으로 판단
- 주된 사업이 여러 기관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우선 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판단

2. 등록요건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 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 (법 제2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 위 각 호의 등록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사업범위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있고, 2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중앙행정기관에 한함)

〈 등록제외대상단체 예시 〉

정당, 조합, 직능단체, 학술단체, 연구단체, 예술단체, 체육단체, 종교단체(교회·절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친목단체(향우회·동창회·종친회)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됨

3. 등록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영 별지 제1호서식)
-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에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 회원명부 1부
- 단체소개서
- 단체의 조직기구표(중앙행정기관만 해당, 2이상의 시·도 지부설치 확인)

〈 법인 등록 〉

| 구 분 | | 신 청 서 류 |
|-----|--------------|--|
| 법인 | 소관기관 법 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신청서 ○ 회원명부 1부 ○ 단체소개서 ○ 단체의 조직기구표(중앙행정기관만 해당) |
| | 타 기 관 법 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등록신청서류」와 동일 |

※ 상기서류 중 「단체소개서」는 등록요건 중 단체의 대표자(또는 관리인) 유·무 확인 및 신청단체현황 파악을 위해, 「단체의 조직기구표」는 2이상의 시도사무실설치·운영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

변경등록

- ① 등록변경신청서 검토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원본 회수) ⇨
- ② 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장 정리 ⇨
- ③ 등록변경사항 통보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재교부 ⇨
- ④ 관보(공보)게재 ⇨ ⑤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

※ 등록변경신청서 접수후 10일 이내 처리

1. 변경신청대상(영 제3조제4항)

- 등록단체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변경신청서(영 별지 제1호서식)를 등록기관에 제출
 -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주된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

2. 신청서류(영 제3조제4항)

가. 공통서류

- 등록변경신청서 (영 별지 제1호서식)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영 별지 제2호서식) 원본 (회수용)
- 등록변경사유서 (서식 7)
- 변경사항이 반영된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회의록 사본 1부

나. 사유별 신청서류

| 변경사유 | 신 청 서 류 |
|--------------|--|
| ① 단체명칭 | · 공통서류 |
| ② 대표자(관리인) | · 공통서류, 대표자인적사항(기본인적사항, 주요경력 등) |
| ③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공통서류, 사무소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소재지증명서, 사무실임차계약서 등) |
| ④ 주된 사업 | · 공통서류, 사업계획서, 예산서 |

등록말소

- ① 말소요건 확인 ⇨ ②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실시 ⇨
 ③ 등록증 회수 ⇨ ④ 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장 정리 ⇨
 ⑤ 관보(공보)게재 ⇨ ⑥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

1. 직권말소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 (영 제4조제1항)
 - 등록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사업을 한 때
 -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한 때
 - 등록단체가 특정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한 때
 - 등록단체가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활동한 때
 - 상시구성원수(회원)가 100인 미만이 된 때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없을 때
- 등록단체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게 된 때
- 정관·총회회의록·공익활동실적 등 등록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형식적인 등록요건을 구비, 단체등록을 한 때
- 등록(변경)신청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단체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 직권말소 절차
 - ① 말소사유를 확인한 다음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등록사항을 말소
 - ② 등록사항을 말소한 때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회수

2. 신청말소

- 등록된 단체가 다음의 사유로 말소신청을 할 때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말소를 희망하여 말소신청을 할 경우
 - 시·도 등록단체가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중앙부처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와 주무관청을 달리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여 말소신청을 할 경우
 - 등록된 몇 개 단체가 연합하여 새로운 단체로 등록코자 할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로 말소신청을 할 경우
- 신청말소 절차
 - ① 「비영리민간단체등록말소신청서」 접수
 - ② 신청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다음 타당한 사유로 말소코자 할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말소 (청문절차 생략)
 - ③ 등록사항을 말소한 때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회수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 | | | 처리기간 | | | |
|--|-----------|--|--|--|-----|----|
| | | | 30일(변경시 10일) | | | |
| 신청인 | ①성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③대표자와의 관계 | | ④연락처 | | | |
| | ⑤주소 | | | | | |
| 단체 | ⑥명칭 | | ⑦연락처 | | | |
| | ⑧소재지 | | | | | |
| | ⑨대표자성명 | | ⑩대표자주민등록번호 | | | |
| | ⑪대표자주소 | | ⑫대표자연락처 | | | |
| | ⑬주된 사업 | | | | | |
| <p>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 | | | | | |
| <p><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에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기재후 "외 ○○인"으로 표기하여야 함) 1부 ※ 법인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중 회원명부만 제출 <p>< 등록변경신청시 구비서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및 회칙 각 1부 2. 대표자·관리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1부 | | | <table border="1"> <tr> <td>수수료</td> </tr> <tr> <td>없음</td> </tr> </table> | | 수수료 | 없음 |
| 수수료 | | | | | | |
| 없음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분실(훼손) 재발급 신청서 | | | |
|--|---|-------------|--|
| 등 록 단 체 명 | | 등 록번호 | |
| 소 재 지 | | | |
| 대 표 자 |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
| | 주 소 | | |
| | 연락처 | | |
| 주된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
| 분 실 (훼손) 사 항 | 분실(훼손) 일자 | | |
| | 분실(훼손) 사유 | * 구체적으로 기재 | |
| <p>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 | | |

|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말소신청서 | | | 처리기간 : 없음 |
|--|----------------|--|-----------------------|
| 신청인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 번호 |
| | ③ 대표 자 와의관계 | | ④ 연 락 처 |
| | ⑤ 주 소 | | |
| 단 체 | ⑥ 명 칭 | | ⑦ 연 락 처 |
| | ⑧ 소 재 지 | | |
| | ⑨ 대 표 자 성 명 | | ⑩ 대 표 자 주민등록 번호 |
| | ⑪ 대 표 자 주 소 | | ⑫ 대 표 자 연 락 처 |
| | ⑬ 주된사업 | | |
| 말소사유 | ※ 구체적으로 기재 | |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div> <div style="text-align: center;">(서명 또는 인)</div> <div style="text-align: right;">귀하</div>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총 회 회 의 례

1. 회의일시 :

2. 회의장소 :

3. 회의안건 :

4. 출석회원 : 명 중 명

5. 회의내용

○

○

○

○

○

년 월 일

대 표 ○ ○ ○ (인)

이 사 ○ ○ ○ (인)

" ○ ○ ○ (인)

" ○ ○ ○ (인)

" ○ ○ ○ (인)

○○년도 수지예산서

1. 세 입

| 목 | 예산액(원) | 산출내역 | 비고 |
|-----|--------|------|----|
| 회비 | | | |
| 후원금 | | | |
| 지원금 | | | |
| 잡수익 | | | |
| : | | | |
| 계 | | | |

2. 세 출

| 목 | 예산액(원) | 산출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년도 사업수지결산서

(단위 : 원)

| 수 입 | | | 지 출 | | |
|--------------|-----|--|--------------|-----|--|
| 과 목 | 금 액 | | 과 목 | 금 액 | |
| ① 회 비 | | | ① 인건비 | | |
| ② 회비외 수 입 | | | ② 운 영 경 비 | | |
| ③ | | | ③ | | |
| ④ | | |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합 계 | | |

※ 여백락은 단체의 성격에 맞게 조정 사용

등록변경사유서

| | | |
|----------|------|--|
| 단 체 명 | | |
| 변경신청사항 | | <input type="checkbox"/> 단체의 명칭변경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변경 <input type="checkbox"/>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input type="checkbox"/> 주된 목적사업의 변경 ※ 해당란에 "√"표 |
| 현 행 | | |
| 변경 사항 | 변경일자 | |
| | 변경내용 | |
| 변경사유 | | (변경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영문표기)

| | |
|----------------------|--|
| 주 소 및 연 락 처 | (우편번호) |
| | <input type="radio"/> 전화 : <input type="radio"/> 지원사업 담당 : <input type="radio"/> FAX : <input type="radio"/> E-mail : <input type="radio"/> 인터넷 홈페이지 : |
| 설립목적 |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 단체연혁 |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 상 시 구성원수 (회원수) | <input type="radio"/> 회 원 수 : <input type="radio"/> 대표자명 : |
| 사 무 국 직 원 수 | <input type="radio"/> 명 (사무총장○, 실장○, 직원○ 등) |
| 기구현황 | |
| 2001 예산현황 | <input type="radio"/> 2001 예산총액 :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기부금 및 모금활동(%) 정부보조(%), 사업수익(%), 기타 (%) |
| 2001 주요사업 |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지원 관련 법 규 집

2007년 12월 일 인쇄

2007년 12월 일 발행

•발 행 : 통일부 혁신재정기획본부

Tel. 2100-5691

•인 쇄 : 진명인쇄공사

Tel. 2279-1470
